

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허훈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7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허 훈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서준오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52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조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한 경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, 경품 관련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품 제공 관련 내부 규칙이 없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고 모호한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
- 이에 경품 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경품 제공의 근거 규정을 구체화해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경품 제공 및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경품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직선거법

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경우 시민의 참여 실적·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거나 추첨,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경우”로, “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그 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1. 시민의 참여 실적·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지급
2. 추첨,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
-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경품은 중복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, 경품의 종류, 제공 방법 및 제공 금액 등 경품 제공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·운영하는 <u>경우 시민의 참여 실적·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거나 추천,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시민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시민의 참여 실적·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지급</u></p> <p>2. <u>추천,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</u></p> <p>③ <u>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경품은 중복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, 경품의 종류, 제공 방법 및 제공 금액 등 경품 제공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</u></p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해당 소통 매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칙으로 정한다.

④ -----

----- 그 밖-----

-----.